

준비서면

사 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
원고(항 소 인) 김 명 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귀
원의 2006. 10.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증인 정봉화, 배형주 신청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이 모두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모두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수학과 학과장으로서 수학과에서 제출한 각종 징빙자료를 직접 수집, 작성한 정봉화 교수 및 제9호증의 9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당시 수학과 4학년생으로서 95학년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낙제점수(F)를 받아 학교 측이 마련한 보충강의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배형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2.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학칙 제35조는 「① 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사에 관한 내규 5. 성적평가는 「① (평가방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하되 시

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칙 및 내규에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성적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방식이라 하여도 자의적인 성적 부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칙에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을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평가표는 1995년 2학기 논리학 성적기록표의 예와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성적기록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의적인 성적평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점수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출석·과제 및 시험성적 등 제반 성적평가 요소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① 1991학년도 2학기 위상기하학 : 24명 수강생중 물리학과 학생 1명(F부여)을 제외한 23명 전원에게 A+ 등급 부여. 특히 22명에게 96점을 일괄적으로 부여, ② 1992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10명 수강생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전원에게 82점을 부여, ③ 1993학년도 2학기 위상수학2 : 20명 수강생중 3명(A+ 부여)을 제외한 17명 전원에게 B+ 등급 부여. 특히 17명에게 일괄적으로 85점을 부여함.

3. 을 제3호증의1 기재와 관련하여 원고 징계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한 변명자료 중 누락된 95 내지 99쪽, 128 내지 131쪽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입 증 방 법

- 1. 을 제20호증의 1, 2
- 1. 3, 4
- 1. 5
- 1. 6
- 1. 을 제21호증

각 교원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요구서

각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교원인사기록카드

학사에 관한 내규

2006. 11.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 재 원

정 재 응



서울고등법원 제2권사부

귀중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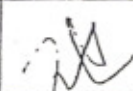

문서번호 : 법인 제 95 호

시행일자 : 1995. 9. 6. (년)

(경유)

수신 : 교원징계 위원회 위원장

참조 :

선결	위원장		지시	
접	일자 시간	95.9.12	결사	
수	번호	교징위 1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제목 : 교원 징계 의결 요구

교무 제 376호 ('95. 7. 19.)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 합니다.

유첨 : 교원 징계 의결 요구서 1부

끝.

을
제
20
호
증
1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 사



교원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함	성명	한글	김명호	주민등록번호	570217 - 1066932		
		한자	金明浩	직위(급)	조교수	제직기간	4년 6월
	소속	이과대학 수학과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48-9					

징계사유

사립학교법 제 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항

1. 해교행위
2. 학사질서 문란행위
3. 타교수 비방
4. 교육자로서의 자질의혹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본교와 징계 해당자가 속해 있는 학과 교수 및 학생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신중하고도 적절한 의결을 요함.

사립학교법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學校法人 成均館大學
理事長 白南億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을
제
20
호
증
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문서번호 교징위 제 2 호
 시행일자 1995. 9. 13. (년)
 (경유)
 수신 : 내부결재
 참조 :

취급			위원장
보존	년		
간사			
기안	이종렬		
			협조

제 목 : 제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95. 9. 12일 개최된 제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를 별첨과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 회의록 1부

을
제
20
호
증
3

교원징계 위원회 위 원 장

제 1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 일자	'95. 9. 6.
위원 정 수 : 7 명	제 적 위 원 : 7 명

1. 일 시 : 1995. 9. 12. (화) 14:05 - 15:10
2. 장 소 : 대학본부 이사장실
3. 참석위원 : 김경수, 정경모, 전몽각, 정성근, 김병택, 심윤중, 원동호
4. 이사장인사: 백남익 이사장은 참석 위원들에 대한 인사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적절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하고 퇴장하다.
5. 위원장선출: 끝이어, 참석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전몽각 부총장을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6. 개회선언 : 전몽각 위원장은 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7. 경위설명 및 향후일정 논의 :
 - 전몽각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해당교원의 소속학장인 김병택 위원에게 그간의 경위 설명을 요청하다.
 - 김병택위원의 경위 설명에 이어 심윤중, 원동호 위원 순으로 보충 설명을 하다.
 - 정경모, 김경수 위원 : 교수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신분이므로 징계 요구 사유 중 법적 요건에 위배된 행위에 한하여 세밀한 증거 및 증빙자료가 준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다.
 -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해당 당사자 중 학교측(해당학과)의 소명자료 및 진술을 요구하기로 하다.
8. 차기 회의 일정을 1995. 9. 19 (화) 15 : 00 대학본부 이사장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15 : 10 분에 산회하다.

을
제
20
호
증
4

기록자 : 간 사 최 윤 한





확 인 자 : 위 권 장 전 몽 각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우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 전화(02)760-1044/전송(02)744-2453

문서번호 교정위 3 호
 시행일자 1995. 9. 19. (년)
 (경유)
 수신 : 보 고
 참조 :

취급		위원장
보존	년	김현
간사		
기안	이종 	협조

제 목 :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995.9.19.(화) 개최된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 합니다.

첨 부 : 제 2차 교원징계 위원회 회의록 1 부. 끝.

을제 20호증 5

교원 징계 위원회 위 원 장

이력서 20호 정 6

① 분류번호 111111
 ② 주민등록번호 570219-1066932
 ③ 성명 김명호
 ④ 이름 김명호

④ 원적 忠南 牙山 郡 陰峰 面 松村 里 ① 주소 111111 金海
 ⑤ 본적 忠南 牙山 郡 陰峰 面 上道 二洞 365-23 号 ⑥ 본관 金海
 ⑦ 전 번호 ⑧ 00 전 ⑨ 00 전 ⑩ 00 전 ⑪ 00 전 ⑫ 00 전 ⑬ 00 전 ⑭ 00 전 ⑮ 00 전 ⑯ 00 전 ⑰ 00 전 ⑱ 00 전 ⑲ 00 전 ⑳ 00 전 ㉑ 00 전 ㉒ 00 전 ㉓ 00 전 ㉔ 00 전 ㉕ 00 전 ㉖ 00 전 ㉗ 00 전 ㉘ 00 전 ㉙ 00 전 ㉚ 00 전 ㉛ 00 전 ㉜ 00 전 ㉝ 00 전 ㉞ 00 전 ㉟ 00 전 ㊱ 00 전 ㊲ 00 전 ㊳ 00 전 ㊴ 00 전 ㊵ 00 전 ㊶ 00 전 ㊷ 00 전 ㊸ 00 전 ㊹ 00 전 ㊺ 00 전 ㊻ 00 전 ㊼ 00 전 ㊽ 00 전 ㊾ 00 전 ㊿ 00 전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업·직장·직위
부	모	金勳培	南順佑	306223-1066914	중졸	숙박업소 협회	
부	모	金英權	金明姬	600203-2066928	대졸	유학생	
부	모	金明姬	金明姬	620611-2066921	대졸	학원 선생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업·직장·직위
부	모	金勳培	南順佑	306223-1066914	중졸	숙박업소 협회	
부	모	金英權	金明姬	600203-2066928	대졸	유학생	
부	모	金明姬	金明姬	620611-2066921	대졸	학원 선생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업·직장·직위
부	모	金勳培	南順佑	306223-1066914	중졸	숙박업소 협회	
부	모	金英權	金明姬	600203-2066928	대졸	유학생	
부	모	金明姬	金明姬	620611-2066921	대졸	학원 선생	

⑬		⑭	
기간	종	기간	종
시행기관	구분	시행기관	구분
위	척	위	척
역	주	역	주
위	부	위	부
위	위	위	위
1981.8.31 ~ 1984.8.31		1981.8.31 ~ 1984.8.31	
오라이노 주립대 수학과		오라이노 주립대 수학과	
조교 및 연구원		조교 및 연구원	
1984.9.1 ~ 1988.5.31		1984.9.1 ~ 1988.5.31	
미시건 주립대 수학과		미시건 주립대 수학과	
조교 및 연구원		조교 및 연구원	
1988.8.1 ~ 1989.5.31		1988.8.1 ~ 1989.5.31	
Univ. of Wisconsin 수학과		Univ. of Wisconsin 수학과	
객원 조교수		객원 조교수	
1989.9.1 ~ 1990.8.31		1989.9.1 ~ 1990.8.31	
서울대학교 수학과		서울대학교 수학과	
포스트 닥터		포스트 닥터	
1989.9.1 ~ 1990.12.31		1989.9.1 ~ 1990.12.31	
서울대학교 수학과		서울대학교 수학과	
시간강사		시간강사	

②① 외국어행 및 수화		②② 의 국 어 능 령		외 국 어 명	상	종	하
기	간	국	명	유학		○	
1981.8.20	~ 1989.6.26	미	국				

②③ 저 서		저	시	명	발	행	치	발	행	일

②④ 연 구 문 헌		논	문	명	발	표	기	관	발	표	일	자

주 의 사 항		기 록 사 항		본 인		직 명	
1. 분류번호(①)은 기재하지 않 것. 2. 원저(④), 본저(⑤), 본관(⑧), 기타 인명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3. 주소(②)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되 연필로 기재할 것. 4. 기타 사항은 한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서(③), 연구논문(⑥)은 원어로 기재할 수 있음.		기 록 사 항		본 인		직 명	
		인		관 장		성	
		인		관 장		성	
		인		관 장		성	

1990.12.31
 성명 金明浩
 19


김 명 호

發令日字	發令事項	備考	發令日字	發令事項	備考
91.3.1	임 : 조 고 수 급 : 9호 2급 명 : 이과대학 수학과 근무	법령 2 3.5.5			
92.6.1	임용 기간 1991.3.1 부령 (2년간) 1993.2.28 까지 給 : 9 號 1 級				
93.3.1	임 : 조 고 수 급 : 9호 1급 명 : 이과대학 수학과 근무 제임용 기간 : 93.3.1 - 96.2.29	법령 130 3.5.5			
93.9.1	給 : 8 號 2 級				
94.12.1	給 : 8 號 1 級				
95.12.12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에근거 정직 3월에처함. 기간 : 95.12.12 - 96.3.11				

3. 학사에 관한 내규

1. 교과목의 구분

- ① **필수부**는 **필수교목**, **선행부** 및 **인간선택교목**으로 구분한다.
- ② **필수교목**은 **필수부**인 **기초필수교목**과 **선행교목**인 **제한필수교목**으로 구분한다.
- ③ **선행교목**은 **선이수교목**과 **선행선택교목**으로 구분한다.
- ④ **필수교목**이란 **교과과정**이 설정된 학과의 학생 중 **제2학년초에** **합동학부 2년** 정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아동학과) 또는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 수강생**으로 선정된 자가 **제2학년 내지 제4학년**에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의 **필수** 과목은 그 학과 설정의 **필수** 과목을 말한다.
- ⑤ **필수부**의 이수 구분과 이에 따른 학습 면목은 학과별 **필수** 과목표와 같다.

2. 교과목의 이수

- ① **(교양교목)** **교양부**의 이수학점은 총 42학점(단, 법과대학·사범대학·약과대학은 45학점, 체육대학은 50학점, 이과대학·공과대학은 53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대학별 이수학점의 미달되는 학점을 **제한필수교목** 등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한필수교목)** **제한필수교목**은 학과에서 지정된 **필수교목**과 그외의 **부속** **필수교목**이수 학점을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선행교목)** **선이수교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선정선택** 과목은 학부별 **필수** 과목표의 **선정선택** 과목으로 표시된 **필수부** 중에서 **선행** 과목 규정된 학점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인간선택교목)** **인간선택교목**은 **소속** 학과 **필수** 과목표에 표시된 **인간선택교목** 중 **최저** 이수학점을 충족한 **필수부** 과목과 **선행필수부** 및 **필수부**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한 **제한필수부** 중에서 **인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 ⑤ **(교과교목)** **교과부**의 이수할 **교과**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⑥ **(부속필수부)** **부속** 과목의 **선행** 및 **필수**의 이수가 학과 시행 계획 제9편 및 제10편에 따른다.

- ⑦ **(부속필수부)** **부속** 과목의 **선행** 및 **필수**의 이수는 학과 시행 계획 제9편 및 제10편에 따른다. 다만 **부속** 과목을 이수하고 다시 그 과목을 **부속** 과목으로 이수하는 자는 **기이수한** **부속** 과목을 **부속** 과목 이수학점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속** 과목은 소멸된다.
- ⑧ **(교과** **부속** **필수부)** **필수** 과목, **제한필수부** 및 **역사** **교과** **필수** 과목으로 **제한필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한필수** 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이 과정에서 이수한 **부속** 과목이 제⑥항의 **부속** 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학과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부속**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의 절차)**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② **(수강신청 학점)**
 - (1) 매 학기 18학점을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 약과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다음과 같다.
 - 법과대학·약과대학: 21학점(1989학년도 제1학년부과 적용)
 - 사범대학: 21학점(1988학년도 제1학년부과 적용)
- ③ **(수강신청과목 변경 및 철회)**
 - (1) **수강신청과목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단말기단 등하의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 (2) **수강신청과목 철회**
 - 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내에 탈퇴표수,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철회권을 표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후 총 신청 학점이 최소 14학점(졸업학기는 제한없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을 제 21 호 중

- ④ (시간 중복 과목)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 ⑤ (수강반 지정) 동일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⑥ (선수강 금지) 소속학과 상급 학년의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 6 조 제 2 항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자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받는다.

4.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일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5. 성적 평가

① (평가 방법)

학업 성적은 각 교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표시하고 시험 성적, 출석 상황, 과제 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성적의 위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위소한다.

-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 (2)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2/3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 (3)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
- (4) 소경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학점
-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6) 장기 휴학(군입대 인정학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자퇴자에게 부여된 성적(교육실습 성적은 제외)
- (7)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 (8) 위소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2), (3), (7)의 성적은 위소후 F로 처리한다.

③ (성적 이의 신청)

- (1)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학기 학업성적표를 받은 후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 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한다.
- (2) 담당교수, 강사는 학생의 이의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성적 결정원(정정 이유, 담안지 등 증빙자료 첨부)을 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적 평가자료 보관)

출석부,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담안지 등의 성적 평가자료와 교수보편용 성적기록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6. 졸업논문제 시행 및 관리

①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반표의 평가)

(1)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반표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가"로 평점한다. 만점에 있어서 2인의 평점이 가·부 상당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3인 이상인 때에는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실기반표의 경우 반표 작당 점수가 2중 이상인 때에는 작당당 배점을 100점으로 하고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가"로 평점한다.

(2) 졸업논문과 논문심사에 관련된 서류는 학과장이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② (졸업 종합시험관리 및 평가) 졸업 종합시험은 해당 학과장 및 학장이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시험을 실시하고 이의 관장은 학과장, 학장 및 학과교수 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과목당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총점의 60%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1) 응시자격 책정
- (2) 시험일자, 시험과목 등 게시
- (3) 응제위원 위촉
- (4) 채점위원 위촉
- (5) 채점방법 결정(복인 채점방법을 채택 함)
- (6) 합격자 사정(소정 판정표에 외거 사정 함)
- (7) 졸업 종합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소정 서식)
- (8) 시험지, 기타 시험관계 서류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

③ (졸업논문 작성)

- (1) 논문 체계 : 서식은 필서로 하고 용지는 200자 원고지 또는 16절지로 한다.
- (2) 작성 요령
 - (가) 표지는 소정 용지로 한다.

- (나) 본문에는 목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주는 원고지 밑에 기술하여 본문과의 연관 번호를 붙여야 한다.
- (라) 인용(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본문 밑에 인용 순서대로 모아 기재하여야 한다.
 - 참지의 경우: 필자, 참고 문헌명(서명), 필(호), 연, 년도
 - 단행본의 경우: 저자, 서명, 면(페이지), 출판사, 년도
 다만 인용 범위가 전절인 경우에는 면수준 배고 절은 그 자리에 기입하여야 한다.
- (마)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 숫자표시 예: 78℃~75℃, 650ton
 - 단위표시 예: m, kg
- (바) 논문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반드시 원어를 써야 한다.

(3) 제출 부수: 1부

- (4) 제출 기일 및 제출처: 11월 말일(후기졸업 예정자는 5월 말일)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실험실습 보고, 실기발표 처리) 해당 학과장이 주관한다.

- (1) 실험실습 보고서 작성 요령: 졸업논문 작성 요령과 같다.
- (2) 실기발표·작품제작: 전 제작 과정을 담당 지도교수가 직접 지도제작하게 된다.
- (3) 심사 방법: 졸업논문 심사 규정에 준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학과장이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는다.
- (4)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장 및 학장을 심사 결과 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소정 서식).
- (5) 서류 보관: 실험실습평가 관계서류, 실기발표, 작품의 사진 기타 참고 서류는 학과장이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7. 휴학

① (단기 휴학)

(1) 대상자

- (가)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다만, 제 1 학년(당해년도 신입학자) 제 1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제 2 학기에 휴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나) 과 등

(2) 제출기한

- (가) 제(1)호 (가) 대상자는 학기초 소정기간 내로 한다.
- (나) 제(1)호 (나) 대상자는 수업일수 5분의 2선 이내로 한다.

(3) 구비 서류

- (가) 휴학원서 1종(소정 서식)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호 (가)의 1학년 휴학자와 (1)호 (나)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1통.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명서류

- (4)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휴학원서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 휴학)

- (1) 장기 휴학은 군입대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재학 또는 휴학 중 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자는 입대하기 전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학적부에 제출하여 장기 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입영 명령서 사본은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기 휴학처리가 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 (4) 입영 기일 연기나 입대 후 귀향조치된 경우 학적부에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복학

- ① (단기 휴학자의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학적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 휴학자의 복학)

- (1) 군입대로 인한 장기 휴학자는 군제대 후 1년 이

- 내역 이수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2) 장기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에 명적확인서(주민등록 초본)를 첨부하여 학적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등록을 하고 학기말시험 전에 입학하여 장기휴학 조치된 자는 제대 후 부학 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자 인정학점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장기 휴학자가 제대후 만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9. 군입대자 인정학점

- ① (인정학점 신청) 등록 및 수강신청을 마친 자가 해당학기 총 수업인수의 3분의 2이상은 수강하고 입대할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에 입대사실(증빙서류 첨부)을 신고하고 성적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자 5일전까지 실시되는 학기말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 ② (성적 인정) 인정학점 신청 과목의 각 과목표수는 중간시험성적, 평소의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학습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0. 재입학

- ① (재입학의 제한)
 -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역적이 있는 범위 내에서 퇴학 또는 제적 후 10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학칙 제55조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및 학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② (재입학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 서식)를 보통인 연서로 학적부에 제출하고 기위득 학점수에 의한 학년 조정을 받아 심사할 거쳐 허가된 다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재입학자의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학년조정될 잔여 수업연한의 1배반으로 하며 통산 6년(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1. 학사 편입학

- ① (수업 년한과 재학 년한)
 - (1) 수업 년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년한은 3년으로 한다.

- (2) 재학 년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된다.

② (교과 및 이수)

- (1) 졸업학점은 7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은 78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 (2) 학점 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교양: 유학 3학점
 - (나) 전공필수 및 선택: 학과별로 교육 과정에 규정된 학점, 다만 법과대학은 전공필수 67학점(교육과정의 규정된 전공필수 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학과에서 별도로 지정함)과 전공선택 8학점 이상, 약학대학은 전공필수 57학점과 전공선택 12학점 이상.
 - (다) 일반선택: 4학점(나항의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전공선택 포함)이상, 다만 법과대학, 약학대학은 제외.
 - (라) 원적대학이 본 대학교인 자는 유학 대신 다른 과목을 3학점이상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적부의 성적기록 관리)

학사 편입학 한 후 취득한 학점 및 성적만을 학적부에 기록 관리한다.

12. 계절제 수업

- ① (수강신청 학점) 1회 6학점 이내로 한다.
- ② (개설 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 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개설한다.
- ③ (수강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개설 기간 및 장소) 제 1 학기 종강 후 캠퍼스 별로 16일간(공휴일 및 시험 시간(1회) 포함) 1, 2학기 과목을 구분 개설한다.
- ⑤ (야간강좌 개설) 18:00이후에 개설한다.
- ⑥ (성적 처리)
 - (1) 성적 평가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다.
 - (2)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별도로 한다.
 - (3) 취득 성적은 졸업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사경고, 유급, 장학생 선발 등과는 무관하다.

13. 증명서 발급

- ① 국문, 영문증명서 종류
 -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 (4) 수료증명서
 -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포함)
 - (6) 성적증명서 (7) 표적과목이수증명서

② 발급처: 교무처 학적과(자연과학캠퍼스 교무과, 야간강좌 교학과)에서 발급한다.

③ 재중점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란 납부하여야 한다.

14.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본적,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기제원 호적소문 및 주민등록출생과 2층 접부)을 교무처 학적과(자연과학캠퍼스 교무과, 야간강좌 교학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점서는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 2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학년도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학년도전 법과대학 학사전입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